

일본 쌀 집하원활화대책 개요

일본의 쌀에 대한 집하원활화대책은 산지지원대책과 논농업 경영확립대책들 중의 하나로써 쌀 수량조정 실시요강, 논농업 구조개혁대책 실시요강 등과 함께 쌀 정책개혁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지원대책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집하원활화대책 실시요강 및 동 실시요령을 중심으로 이 대책의 개요를 정리한다.

1. 취지

풍작으로 발생하는 과잉 쌀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요에 따라 판매되는 쌀생산 촉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이 주식용 쌀 가격의 하락으로 영향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이자 단기융자방법을 활용해 수확철인 가을 농업인에 의한 과잉 쌀의 구분 출하를 촉진함과 함께 농업인단체 등에 의한 주체적인 판매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해 간다. 용자 상황이 쌀로 처리되는 경우 그 쌀이 국내 주식용 쌀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집하원활화대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실시 주체

제3의 3.1(과잉쌀 단기용자사업) 및 3.2(과잉쌀 단기용자원활화사업)에 대한 대책의 실시 주체는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1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이다.

제3의 3.3(집하장려사업)에 대해서는 미곡의 생산 출하를 사업으로 하며, 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인정을 받은 생산조종방침(이하 ‘인정방침’)을 작성한 자를 구성원으로 한 전국단체(이하 ‘전국출하단체’)로 한다.

3. 대책 내용

3.1. 과잉쌀 단기용자사업

기구는 인정방침에 따라 미곡 생산을 행하고, 이 대책에 가입한 생산자(이하 ‘대책가입자’)로부터 생산자 각출금과 정부로부터의 무이자대부 등에 의해 자금(이하 ‘과잉쌀 대책자금’)을 조성한다. 대책가입자에 대해 풍작에 의한 과잉쌀을 주식용 등 다른 미곡과 구분하고, 재고로서 보유하는 조치(이하 ‘구분보관’)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무이자자금 대부를 행한다.

3.2. 과잉쌀 단기용자원활화사업

기구는 인정방침을 작성한자(이하 ‘인정방침작성자’)가 대책가입자로부터 집하한 또는 대책가입자로서 스스로 생산한 풍작에 의한 과잉쌀을 구분보관하고, 국내 주식용 쌀 등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지지 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와 함께 대부한 무이자자금의 상환이 미곡으로 행해졌을 경우 당해 미곡을 국내 주식용 쌀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3.3. 집하장려사업

전국출하단체는 그 구성원이자 또 한편으로 인정방침작성자인 출하단체(이하 ‘산지출하단체’)가 3.1의 사업(과잉 쌀 단기용자사업)에 의해 풍작으로 인한 과잉 쌀을 스스로의 인정방침에 참가하는 대책가입자로부터 주식용 등 다른 미곡과 구분하여 집하하는 구조(기구)를 지지하기 위해 조성금의 교부를 행하도록 한다.

4. 대책 실시

4.1. 가입계약

(1) 이 대책에 가입하고자 하는 미곡 생산자는 인정방침생산자로서 기구와 가입계약을 하거나(이하 ‘직접가입’), 혹은 스스로가 참가하는 인정방침작성자와 대책으로의 가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인정방침작성자가 기구와 가입계약을 하며(이하 ‘단체가입’), 생산자는 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2) 단체가입의 경우 이 대책에 가입하고자 하는 미곡 생산자는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장(이하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하나의 인정방침작성자와 가입위탁계약(이하 ‘생산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대책에 관한 대부 신청 등의 절차를 위탁하기로 한다.

(3) 직접가입의 인정방침작성자 혹은 (2)에 의해 생산자가입계약을 체결한 인정방침작성자는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기구와 가

입계약(이하 ‘대책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2. 생산자 각출금

(1) 기구는 매년 대책가입자로부터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생산자 각출금을 납부시키기로 한다.

(2) 기구와 대책가입계약을 체결한 인정방침작성자(이하 ‘계약방침작성자’)는 단체가입의 경우 생산자가입계약을 체결한 미곡 생산자(이하 ‘가입 생산자’)로부터 생산자 각출금을 납부시키고, 계약생산자와 관계되는 생산자 각출금을 한데 모은 뒤 기구에 납부한다.

(3) 계약방침작성자는 인정방침에 있어서 정하는 바에 의해 기구에 대해서 생산자 각출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4.3. 풍작에 의한 과잉쌀 수량의 산출

(1) 계약방침작성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풍작에 의한 과잉쌀 수량을 산출한다. 단체가입의 경우 계약방침작성자는 계약생산자마다 풍작에 의한 과잉쌀 수량을 산출하고, 계약생산자에 대해서 통지하기로 한다.

- ① 농림수산통계자료 10월 15일 현재 전국의 작황지수가 101 이상인 것
- ② 농림수산통계자료 10월 15일 현재 작황지수에 있어서 대책가입자의 주소가 있는 도도부현 및 지역의 작황지수가 101 이상인 것

(2) 풍작에 의한 과잉쌀 수량은 대책가입자마다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¹⁾에 의해 산출하기로 한다.

1) 풍작에 의한 과잉쌀 수량 = 주식용 등 수도작재배면적 × 과잉 쌀 산정단수
× 지역 작황지수/100 - 생산확정수량

※ 과잉쌀 산정단수 = 생산확정수량 / 재배확정면적

산정결과, 풍작에 의한 과잉쌀 수량 ≤ 0 경우는 풍작에 의한 쌀 수량=0으로 한다.

4.4. 과잉쌀 단기용자사업

(1)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미곡(이하 ‘대부대상 미곡’)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미곡으로 한다.

- ① 4.3의 (2)의 품작에 의한 과잉쌀 수량 중에서 구분보관하고 있는 것
- ② 4.2의 (1)의 생산자 각출금 납부를 행하는 것과 함께 당해연도에 있어 생산조정실시자(쌀 수량조정실시요강(2004. 4. 1) 제6의 3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정촌장의 확인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
- ③ 당해 미곡 생산자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는 논에서 재배하는 것
- ④ 농산물검사법(1971) 제3조에서 규정하는 품위 등 검사를 받고 있는 것(단 공동 건조 조제시설 등에 저장되어 있는 벼에 대해서는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 계약방침작성자에 의한 자주 확인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
- ⑤ 쌀 수량조정실시요강 제6의 6.2의 (4)에서 정한 가공용 쌀 및 쌀 수량 조정실시요강 제6의 6.2의 (5)에서 정한 수요개발 쌀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1)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미곡에 대해 무이자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계약방침작성자는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기구에 대해 대부신청을 한다.

(3) 기구는 계약방침작성자로부터 무이자자금 대부신청이 있는 경우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한 바대로 과잉쌀 대책자금에서 계약방침작성자에 대해 당해 신청한 대부대상 미곡의 수량에 따라 무이자자금을 대부한다.

(4) 계약방침작성자는 기구에서 대부된 무이자자금(이하 ‘대부금’)을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한 바대로 기구에 대해 상환한다.

(5) 계약방침작성자로부터 기구로의 상환은 금전에 의한 것 외에 종합식

료 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부분 대상 미곡의 인도에 의한 것으로
도(이하 ‘현물변제’) 할 수 있다.

4.5. 과잉쌀 단기용자원활화사업

(1)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미곡은 4.4의 과잉쌀 단기용자사업의 대부분 대상 미곡 중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국내 주식용 미곡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된 미곡²⁾으로 한다.

(2) 이 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계약방침작성자는 과잉쌀 단기용자사업에 관한 대부분을 기일까지 반환하고,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기구에 대해서 조성금의 교부를 신청하기로 한다.

(3) 기구는 계약방침작성자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한다.

(4) 기구는 계약방침작성자로부터 대부분 상환이 현물로 행해졌을 경우 종합식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미곡을 국내 주식용 쌀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고, 대부분 회수를 한다. 기구는 제6의 6.2의 (1)에서 정한 국가 보조에서 (3)에 의해 계약방침작성자로 교부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활용하고, 이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한다.

-
- 2) 국내 주식용 쌀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된 미곡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생산년도 다음 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확인일까지 요강 제4의 4.4의 (1)의 ① 구분보관을 행하고 있는 것, ② 주식용 쌀, 가공용 쌀, MMA 쌀이 판매되고 있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공급된 것 혹은 공급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 ③ 기존용도에 있어서도 쌀 이외의 원료나 수입 쌀가루 조제품을 원료로써 이용하고 있으며, 당해 원료로 대체하는 것 혹은 당해 용도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로 공급하는 것 또는 공급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것, ④ 기구에 대해 현물 변제된 것

(5) 계약방침작성자는 이 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종합식료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기구에 보고한다. 기구는 이 보고를 취합해 종합식료국장에게 보고한다.

4.6. 집하장려사업

(1)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미곡은 계약방침작성자인 산지출하단체(이하 ‘계약출하단체’)가 구분 보관한 대부대상 미곡 중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국내 주식용 쌀 등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 되는 미곡으로 한다.

(2) 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계약출하단체는 과잉쌀 단기 용자사업에 대부금을 기일까지 상환하고,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전국 출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3) 전국출하단체는 계약출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종합식료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성금을 교부한다.

(4) 계약출하단체는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종합식료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국출하단체에 보고한다. 전국출하단체는 이 보고를 정리해 종합식료국장에게 보고한다.

5. 과잉쌀 대책자금의 관리

5.1. 자금 조성

(1) 기구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금을 가지고 과잉쌀 대책자금(제5에 있어서는 ‘자금’이라고 칭함)을 조성한다.

- ① 제4의 4.2에 의해 생산자가 각출하는 생산자 각출금

- ② 제6의 6.1에 의해 국가가 대부하는 정부 대부금
- ③ 기타 수입

(2) 기구는 (1)의 ① 및 ②에 관련된 자금수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2. 자금 관리

(1) 기구는 자금을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 ① 은행, 농림중앙금고로의 예금
- ② 우편저금
- ③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또는 은행 또는 농림중앙금고가 발행하는 채권, 기타 종합식료국장이 지정한 유가증권 취득
- ④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로의 금전신탁(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⑤ ③에 의해 취득한 유가증권의 신탁업무를 하는 은행 및 신탁회사로의 신탁

(2) (1)의 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과실의 취급에 대해서는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한다³⁾.

(3) 기구는 자금이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다음해 이후로 이월한다.

5.3. 구분처리

기구는 이 대책에 관련한 경리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관계있는 경리와 구분하여 특별예산을 설정해 실시해야만 한다.

3)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한 과실의 취급에 대해서는 이 대책 실시에 필요한 사무비 및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6. 국가 보조

6.1. 무이자자금 대부

(1) 국가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 기구에 대해서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제3의 3.1사업(과잉쌀 단기용자사업)에 필요 자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부한다.

(2) 기구는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제5조가 정하는 것 이외에 종합식료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정부 대부금을 반환한다.

6.2. 국가 보조

(1) 제3의 3.2사업(과잉쌀 단기용자원활화사업)에 필요 경비는 정부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구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2) 제3의 3.3사업(집하장려사업)에 필요 경비는 정부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출하단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한다.

7. 실시기간

이 대책 제3의 3.2(과잉쌀 단기용자원활화사업), 제3의 3.3(집하장려사업) 사업은 그 실시 기간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개년산 미곡으로 한다.

자료 : 일본 農林水産省, “集荷円滑化對策實施要綱” 및 “集荷円滑化對策實施要領”
(박기환 kihwan@krei.re.kr 02-3299-43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